■ 도선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7. 1. 2.>

도선료(도선선료) [ ] 신고서 [ ] 변경신고서

신고인 (도선사)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신고내용	적용 도선구의 명칭	
	적용 예정일	
	변경 사유	

「도선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료(도선선료)를 신고(변경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 2.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(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서로 이를 갈음함) 1부 3. 변경사항 대비표(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) 1부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토 및 확인	➔	수리	➔	통보
신청인		해양수산부		해양수산부		해양수산부		신청인

210㎜×297㎜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